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0. 20.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7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5.10.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박춘은)

가. 제안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면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사항을 반영 및 같은 법 제6조의 허가기준보다 불합리하게 규정된 면적조항을 상위 근거 법령에 맞게 삭제·정비 필요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변경 사항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 위임 근거가 없는 면적조항 삭제(별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위 법령에 맞게 면적조항을 삭제함
(안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제3호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5.7.29 시행)이 개정되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허가기준보다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용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중 용기 충전소(3,000 m^2 이상) 및 자동차 충전소(1,000 m^2 이상)의 대지 면적 제한 사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충전소 허가 기준 중 대지 면적에 대한 위임 근거가 미약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과제에 해당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제한사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충전소와 자동차 용기 충전소의 대지 면적 제한 폐지 등의 가스사업 허가기준 완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스사업 허가 후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90 호
----------	--------

제출연월일 : 2015.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면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사항을 반영 및 같은 법 제6조의 허가기준보다 불합리하게 규정된 면적조항을 상위 근거 법령에 맞게 삭제·정비 필요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면개정으로 인한 법조문 변경 사항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위임 근거가 없는 면적조항 삭제(별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위 법령에 맞게 면적조항을 삭제함 (안 별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제3호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심사실시(대상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원안 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 동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9. 03.~ 2015. 9. 23.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제3조 또는 제6조”를 “제5조 또는 제8조”로 한다.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란 중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란 중 제4호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p> <p>【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제3조 관련)</p>	<p>제1조(목적) ----- ----- ----- --- <u>제6조제2항</u>----- ----- -----.</p> <p>제2조(정의) ----- ----- ----- ----- <u>제5조</u> <u>또는 제8조</u>----- -----.</p> <p>【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80%;">허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생 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td> <td>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용기 충전소 대지는 3,000㎡이상, 자동차 충전소 대지는 1,000㎡ 이상 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중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5.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td> </tr> </tbody> </table>	구분	허가기준	공통사항	(생 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용기 충전소 대지는 3,000㎡이상, 자동차 충전소 대지는 1,000㎡ 이상 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중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5.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80%;">허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통사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td> <td>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삭제) 4.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5.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td> </tr> </tbody> </table>	구분	허가기준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삭제) 4.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5.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구분	허가기준												
공통사항	(생 략)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용기 충전소 대지는 3,000㎡이상, 자동차 충전소 대지는 1,000㎡ 이상 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공중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5.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구분	허가기준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삭제) 4.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가)의 2배로 한다. 5.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탱크로리 통행금지 지역내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허가업소의 변경허가 사항은 제외한다.												

구분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생략)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생략)
고압가스 일반제조사업	(생략)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생략)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저 장소의 설치	(생략)
고압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스 수입업소	(생략)

구분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현행과 같음)
고압가스 일반제조사업	(현행과 같음)
고압가스 냉동제조사업	(현행과 같음)
고압가스 저장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저 장소의 설치	(현행과 같음)
고압가스 판매소 및 고압가스 수입업소	(현행과 같음)